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금지 등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32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금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금융 관련 기관·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진입과 국내 경영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기구로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무임.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임원들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에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금지

□ 개정안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5.·6. (생략) ② ~ ⑥ (생략)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① ----- ----- ----- -----.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u>전문성</u>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관이나</u>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u><후단 신설></u>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 ----- ----- <u>전문성이</u> <u>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u> <u>기관 또는</u> -----. <u>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u> <u>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는</u> <u>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다.</u>
1. ~ 3. (생략) ② ~ ④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¹⁾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
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직임.

○ 이 법 및 시행령²⁾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정부출연연구기
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단체 중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8
월, 금융감독원이 해당 기관으로 지정되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받아³⁾ 금융중심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금융중심지법」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에서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
- ②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의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현황과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
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보고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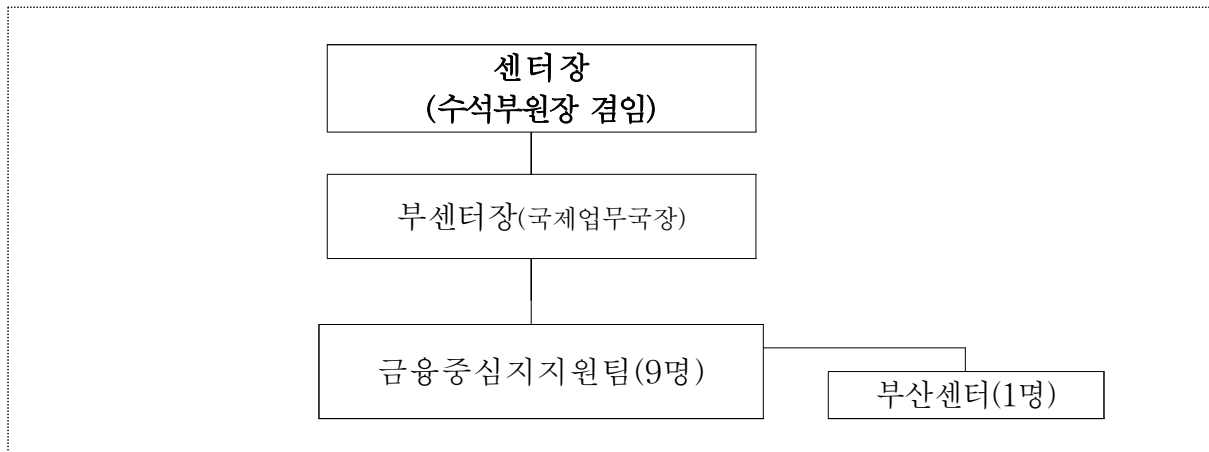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
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3) 금융위원회 예산 세부사업인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1431-301)’ 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사업(내역사업)으로, 2024년 예산 3억 2,700만원(민간경상보조금)이 금융감독원에 지원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1개팀, 1개 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겸임하는 센터장 이하 부센터장과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⁴⁾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 구성 >



-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 기관인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환경 개선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둘 수 없도록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중심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4) 일반직원 6, 통역 4으로, 통역사 3명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융감독원 일반직원 6명과 통역사 1명의 인건비는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함.

□ 금융감독원이 감독 및 검사 대상기관인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독 및 검사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음⁵⁾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분야 전문성과 경험, 국내·외 감독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진 금융감독기구에서 국내·외 금융기관의 진·출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현재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 외 필요 비용은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조달하고 있어서⁶⁾ 타 기관에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이 금융중심지 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⁷⁾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금융감독원도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핵심 업무는 금융업 인·허가 지원으로 금융감독원 본연의 감독·검사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감독기관 이외 타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5) 2023년 5월과 9월에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 대표들과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6) 현재 지원센터는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으로서 경상비용은 금감원 예산(2024년, 약 9억 2,200만원)으로 운영 중이며 행사 비용만 국비 지원((2024년, 3억 2,700만원) 중

7) 홍콩(HKMA), 싱가포르(MAS) 등 주요국 금융감독기관도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FCA, PRA)도 감독기관의 법적 책무로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명시하고 있음.

제출하였음.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추가적 예산 부담 측면과 더불어 이해충돌의 가능성,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설치 목적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정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행 시행령⁹⁾의 내용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문 의 처

02)6788-5104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금융감독원 정관」

제2조(목적) 금융감독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9)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한다.